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나. 유사 자격·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다. 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수수료 및 채점기준, 교육과정 등(안 제12조의9제1항, 안 별표 3 및 안 별표 6)

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령 제 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응시원서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12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를 “갱신발급하려”로 한다.

제12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

급구조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2조의9제1항 중 “3만원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환불하여야”를 “환불해야”로 한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제12조의11제3항제1호 중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을 “보수교육 기간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

별표 1 동해광역구조본부의 속초란 다음에 강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릉	강원도 강릉시 (강릉해양경찰서)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구조사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은 별표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구조사 1급·2급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실기시험 채점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1. 수상구조사 1급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점수	비 고
영법	잠영(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15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0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Trudgen Stroke, 25m)			
수영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풀기(앞·뒷목, 손목)			
장비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기본 구조	입영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20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15점 4분50초 이상: 12점 4분40초 이상: 9점 4분30초 이상: 6점 4분30초 미만: 0점
	스컬링 (Sculling)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 구조	머리지지/ 머리 턱 고정	정확한 지지·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20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 5kg)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구명조끼 착용법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10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구조 장비 사용법	로프 매듭법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여부	5	
합 계			100	

2. 수상구조사 2급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점수	비 고
영법	잠영(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15	총 100m 기준 1분 50초 이내: 15점 1분 55초 이내: 12점 2분 00초 이내: 9점 2분 05초 이내: 6점 2분 05초 초과: 0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Trudgen Stroke, 25m)			
수영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풀기(앞·뒷목, 손목)			
장비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기본 구조	입영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20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2분 이상: 15점 1분50초 이상: 12점 1분40초 이상: 9점 1분30초 이상: 6점 1분30초 미만: 0점
	스컬링 (Sculling)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 구조	머리지지/ 머리 턱 고정	정확한 지지·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20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 3kg)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구명조끼 착용법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15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합 계			100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

1. 수상구조사 1급

가.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1) 강의실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수영장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3) 사무실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4) 기 타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 비고

구조기술 과목 중 수영구조, 장비구조 훈련시에는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이고, 퇴선방법 훈련시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일 것

나. 장비기준(교육생 20명 기준)

구 분	내 용	보 유 기 준
1) 응급처치	가) 마네킹(성인, 영아)	종류별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총 10개 이상)
	나)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총 10개 이상)
	다)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총 20개 이상)
	라)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총 5개 이상)
	마)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담요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총 5개 이상)
2) 수상구조	가) 레스큐 튜브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총 10개 이상)
	나) 중량물 5kg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총 5개 이상)
	다) 구명조끼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총 20개 이상)
	라) 로프(8～10mm×3m)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총 20개 이상)

	마) 구명뗏목 작동 연습 장비	1개 이상
	바) 교육용 신호탄: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등	3개 이상

다. 강사기준

구 분	인 원	자 격 기 준
1) 책임관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수상구조강사“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상구조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상구조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응급처치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종사한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보조 강사	1명 이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비고

1. 수상구조 강사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상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보조 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교육생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강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상구조사 2급

가.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1) 강의실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수영장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3) 사무실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4) 기 타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교육생 20명 기준)

구 분	내 용	보 유 기 준
1) 응급처치	가) 마네킹(성인, 영아)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총 5개 이상)
	나)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교육생 10명당 1개 이상(총 2

		개 이상)
	다)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 호흡 마스크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총 5개 이상)
	라)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총 5개 이상)
	마)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담요	2개 이상
2) 수상구조	가) 레스큐 튜브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총 10개 이상)
	나) 중량물 3kg 이상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총 5개 이상)
	다) 구명조끼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총 20개 이상)

다. 강사기준

구 분	인 원	자 격 기 준
1) 책임관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수상구조강사“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상구조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상구조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응급처치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

		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종사한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보조 강사	1명 이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비고

1. 수상구조 강사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상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보조 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교육생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강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단위: 시간)

과 목		강의 및 실습 시간	
		1급	2급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1	1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1	1
	소계	2	2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가. 재난상황의 이해	1	1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1	1
	다. 해양환경 및 수상일반	2	2
	라.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계획 수립 및 점검	2	
	마. 사고의 대응 및 의사결정	2	
	소계	8	4
3. 관련 법령(이론)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0.5	0.5
	나. 「선박안전법」	0.5	0.5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0.5	0.5
	라. 「수상레저안전법」	0.5	0.5
	소 계	2	2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 처치, AED 사용법	5	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5	5

	쇼크, 척추손상 환자 처지,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습):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등의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	3	
	소 계	13	10
5. 구조기술(실습)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라. 부상자 구조법 마. 생존수영	7 8 7 4 5	6 7 5
	소 계	31	18
6. 종합구조(실습)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6 2	4
	소 계	8	4
계		64	40

※ 비고

1. 수상구조사 등급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상구조사 1급: 총 교육시간 64시간 중 이론과정 16시간, 실습과정 48시간
   나. 수상구조사 2급: 총 교육시간 40시간 중 이론과정 8시간, 실습과정 32시간
2. 이 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나.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3.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응급환자 처치술 및 운반교육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실시해

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한다.

6.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전에 교육대상자의 기초 수영능력을 확인하고, 교육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초 수영능력 확인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유형, 평영 각 50m 이상 가능여부

나. 잠영 10m 이상

7.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m.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응시등급	확인자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등급
	주소		사진 (3.5㎝ × 4.5㎝)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응시자격 증명서류 2. 컬러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매	수수료 필기시험: 10,000원 실기시험: 30,000원 면접시험: 50,000원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장소 등은 시험시행 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등급란에는 응시하려는 등급을 적습니다.
4. 응시원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210㎜×297㎜[백상지(15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접수		성명	생년월일	등급	종류	시험 응시상황				
연월일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응 시 표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응시등급
	주소			사진 (3.5㎝ × 4.5㎝)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이메일			

응시 횟수	시험일시	응시번호	시험종류	판정	확인
1					
2					
3					
4					
5					
6					
7					
8					
9					
10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150g/㎡)]

수입인지 붙이는 곳				
1.	2.	3.	4.	5.
6.	7.	8.	9.	10.

유의사항

1. 자격시험은 지정된 응시시간 30분 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2. 시험장에는 반드시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말합니다)을 지참하여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불합격된 사람이 다시 응시하려면 이 응시표를 보관하였다가 접수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시험성적표

접수번호	응시번호	성명	응시등급	시험종류	점수	판정	확인

210㎜×297㎜[백상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수상구조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유효기간 :

사진
(3.5㎝×4.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Annex Form No. 16 of Enforcement Regulations under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Waters

No.001

National Lifeguard Certification

Name :

Date of Birth : (Month. Date. Year)

Grade of Qualification :

Certification Number :

Date of Issue : (Month. Date. Year)

Date of Expiration : (Month. Date. Year)

Photo
(3.5㎝×4.5㎝)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0-2,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Waters」 and Article 12-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National Lifeguard.

(Month. Date. Year)

Commissioner of
Korea Coast Guard
Region - OO

seal

210㎜×297㎜[woodfree paper(80g/㎡) or medium quality paper(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m.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번호	자격등급
	자격증 발급일	유효기간
신청사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재발급(갱신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컬러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매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을 갱신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자격증 재작성 →	자격증 발급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대장

성명		생년월일	사진 (3.5㎝ × 4.5㎝)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발급일	발급번호

기재사항		
접수번호	연월일	내 용

210㎜×297㎜[백상지(15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

발급번호	자격등급	성명	발급 연월일	자격번호	비고

210㎜×297㎜[백상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m.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 기관·단체	명칭	교육과정 [ ] 1급 [ ] 2급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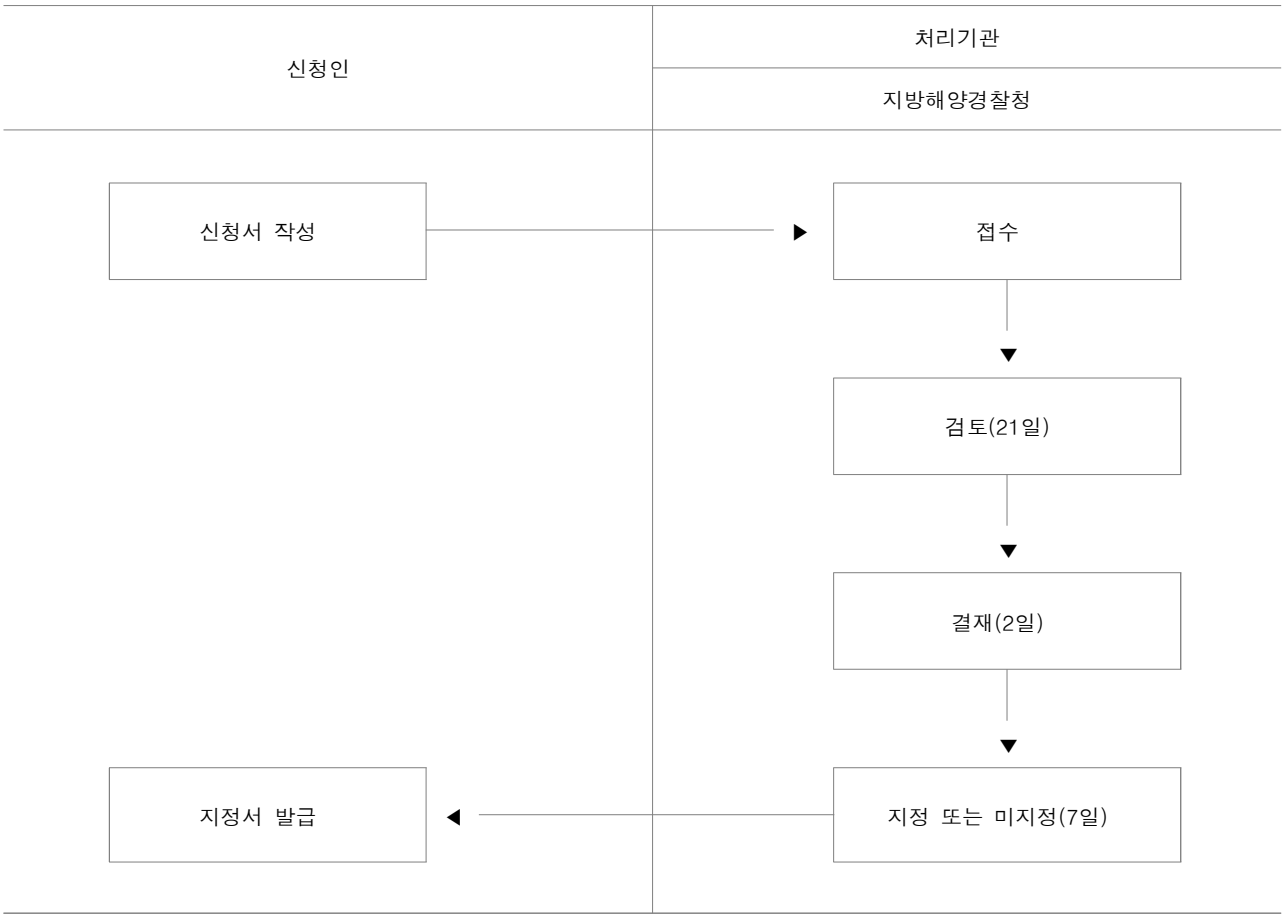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육기관	명칭	교육과정 [ ] 1급 [ ] 2급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기관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수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간	20 . . . ~ 20 . . .	
	총 이수시간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수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등급
	자격번호		유효기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20 . . . ~ 20 . . .	
	총 이수시간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m.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 ] 사전이수 [ ] 연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교육 대상자	성명	
	주소	자격 등급
	생년월일	자격 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갱신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전이수·연기 사유	[ ]해외 체류 [ ]재해·재난 [ ]질병·부상 [ ]구속 [ ]군복무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신청인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교육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전자우편

연기기간
※ 연기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 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수상구조사 자격 [ ] 취소 [ ] 정지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등급
자격 번호	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사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자격증 취소처분·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 ---------- ---------- ---------- ---------- ------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 ---------- ---------- ---------- ---------- ---------- 발급해야----. ---------- ---------- ---------- ---------- ----------.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생 략)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 작성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생 략)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신 설>	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신 설>	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환불해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	1. ---------- --- 보수교육 기간 시작일 전날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